

부처맞춤형
국외단기훈련

2차피해 방지 및 효율적 증거확보를 위한 피해자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 영국의 ABE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2018. 8.

경 찰 청

(김면기, 이정원, 이혜경)

<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훈 련 자	김면기, 이정원, 이해경	직 급	경감
소 속	경찰청		
훈 련 국	영국	훈 련기간	2018.08.12.~08.26
훈 련기관	University of Portsmouth Centre of Forensic Interviewing	훈 련 구분	단기
훈 련목적	2차 피해 방지 및 효율적 증거확보를 위한 피해자 조사 기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매수	59
내용요약	<p>○ (훈련 배경) 피해자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2차피해 최소화와 효율적 증거 수집의 조화방안을 모색하던 중, ‘피해자 조사기법’ 연구에 주목하였고 해외사례 검토한 결과, 영국은 오래전부터 실증적 연구에 기반하여 여러 조사기법을 개발해왔고, 법집행기관들이 이를 활용하여 왔음을 확인 후 총 2주간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훈련 진행</p> <p>○ (훈련 내용) 1) (조사기법의 구조) ①전반적 행위요소(조사자의 태도, 고정관념), ②조사 前 행위요소(라포형성, 기본규칙), ③조사 中 행위요소(조사 기록방법, 질문유형, 표현요구, 보조조사관의 개입 등), ④조사 後 행위요소(평가 및 환류)로 구분하여 교육 2) (훈련자의 교육 내용 실습 및 피드백) 훈련 대상자 3명 모두가 실무 환경과 유사한 장소에서 직접 가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실습을 수행하고, 이를 참관한 교수의 상세한 피드백을 받음 3) (조사기법 매뉴얼 내용 정리) ① ABE 가이드라인, ② 인지면담(CI), ③ NICHD ④ PEACE, ⑤ REID 조사기법에 대한 개괄적 비교·분석 4) (실무 변화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논의) 연구 성과물들이 실무에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 ①리더십 ②법적 구조 ③조사관의 마음가짐 ④조사관의 지식수준 ⑤조사관 교육체계 ⑥조사능력 보증방법 ⑦조사관의 수준과 기술 ⑧기술의 활용 등이 구비되어야 함</p> <p>○ (시사점) 위 훈련과정을 통해 1) 표준적 조사기법 마련 및 교육 훈련 시행, 2) 피해자 전담조사관 운영 및 조사관 평가제도 도입, 3) 조사관의 직접적 조서작성행위 최소화, 4) 교육기관과 실무의 활발한 상호협력 기반 마련, 5) 피해자 조사를 위한 조사환경 등 시설개선 필요성 확인</p>		

< 훈련기관 소개 >

명 칭	<p>포츠머스 대학 조사기법연구소 University of Portsmouth CoFI(Centre of Forensic Interviewing)</p>
소 재 지	<p>영국 포츠머스 6-8, Hampshire Terrace, Portsmouth, England</p>
홈 페이지	<p>www.port.ac.uk</p>
기관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츠머스 대학 부설기관인 조사기법 연구소 “CoFI(Centre of Forensic Interviewing)”는 동 대학의 Becky Milne 교수가 설립한 조사기법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으로서, 그 밖에 심리학, 수사실무 등을 전공한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로 구성 ○ 특히, 지난 `07년 “ABE(Achieving Best Evidence) Document 개발팀”의 일원으로 활약하는 등 AB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밀러(Becky Milne)교수는 위 지침서에 대한 전문가로, 그 내용을 교육 모듈화하여 전수 중 ○ 또한, 밀러 교수는 경찰 수사에서 조사실무를 20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면서, 경찰수사 업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연구자료 등 실무적·학술적 인프라가 매우 잘 구축되어 있음 ○ 이밖에도 영국 경찰, 기타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면담기법 교육 등을 위해 오랜기간 공헌하여, 국내 면담기법 전수에도 높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연구 협조가 수월할 것으로 기대
방문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피해 방지 및 효율적 증거수집을 위한 피해자 조사기법 연구
선정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츠머스대학 조사기법연구소는 영국 내에서 피해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효율적 조사기법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소로, 現 소장인 밀러 교수는 경찰실무에 대한 20년 이상의 집중연구로 해박한 실무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영국 정부가 제작수립한 공식 지침서(ABE)에 관하여 개발팀에 참여 하였던 밀러교수는 정부측과 원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들에 대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기관 및 향후 실무·학술적 교류활동도 매우 용이

목 차

I. 훈련배경	1
1. 피해자 조사의 실태와 문제점	1
2. 국외훈련의 목적	4
II. 훈련 내용	8
1. 조사기법의 구조와 틀에 대한 이론 교육	8
가. 조사자 태도의 중요성과 구체적 모습	
나. 조사자의 고정관념 배제 노력	
다. 조사자와 피해자의 신뢰구축을 위한 라포형성	
라. 조사 전 피해자에게 고시-설명해야 할 5가지 기본규칙들	
마. 조사관의 기록행위(방법)	
바. 피해자 기억회상을 위한 조사관의 질문	
사. 보조조사관의 개입	
아. 피해자 조사에 개입하는 제3자의 활용	
자. 다양한 용어의 표현방법 활용	
차. 환류 및 피드백	
카. 평가	
2. 훈련자의 직접 실습 및 피드백	21
가. 라포 형성 과정 실습	
나. 종합 인터뷰 실습	
다. 느낀 점	
3. 조사기법 매뉴얼(ABE) 내용 분석 및 정리	28
가. 개관	
나. 도입	
다. 계획과 준비	
라. 면담 실시	
마. 증인 지권과 준비	
바. 법적 증인(특별조치)	

4. 실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프레임워크 논의 44

- 가. 개관
- 나. 리더십
- 다. 법적 구조
- 라. 수사관의 마음가짐
- 마. 수사관의 지식수준
- 바. 수사관의 교육체계
- 사. 조사능력 보증방법
- 아. 수사관의 수준과 기술
- 자. 기술의 활용
- 차. 발전방향

Ⅲ. 시사점 48

1. 피해자 조사기법 표준안 마련 및 교육-훈련 시행 필요성
2. 피해자 전담조사관 운영 및 조사관 평가제도 도입-시행
3. 수사관의 직접적 조서작성 행위의 최소화 노력
4. 교육기관과 실무의 활발한 상호협력 기반 마련
5. 피해자 조사환경 등 시설개선 추진
6. 프레임워크 이론을 활용한 정기적 분석 및 평가
7. 장기적 과제로서 피해자 조사 관련 사항의 입법화 추진

※ 참고문헌 53

이번 훈련결과를 전국 14만 경찰관들이 쉽게 공유하기 위하여,
현장실무 경찰관, 정책부서 경찰관들이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경찰청 자체 표준화 서식’과 ‘개조식 서술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I. 훈련 배경

1. 피해자 조사의 실태와 문제점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

- (수동적 측면) 수사의 객체 : 전통적 시각

①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적 증거수집 ②피해자가 보관, 관리하는 물건에 대한 물적 증거수집 ③피해자의 진술을 통한 인적 증거수집(=피해자 조사) ④범죄피해구조청구권¹⁾ 등

- (능동적 측면) 최근 강조됨 : 형사절차 참가, 제3의 주체성 인정

①재판절차진술권 (수사에서 진술권 포함) ②정보권;²⁾ 사건진행상황 통지, 기록 열람 등사 ③절차진행결정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입법사항), 처벌불원 의사 표현으로 양형에 반영 등

○ 범죄수사에서 피해자 조사의 법적지위

- (개념) 현행 형소법의 해석상 수사와 조사는 구별됨³⁾/ 조사(調査)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⁴⁾ 사람에게 대한 조사와 (증거)물건에 대한 조사로⁵⁾ 구분될 수 있음/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인적 증거수집 활동이 “피해자 조사”에 해당⁶⁾

1)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32조 구조금에 대한 규정들

2) 형소법, 범죄피해자보호법, 특별법 등; 행정규칙 경찰 검찰 피해자 보호규칙포함; 연이어 언급하는 절차진행결정권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알 권리가 보장되었을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절차진행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경찰학연구 17(2) (경찰대학, 2017), 191-218 참조

3) (수사와 조사의 준별) △ 형사소송법의 규정형식과 해석상 “수사”와 “조사”는 구분됨 △ 먼저 수사와 조사의 용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음 △ 형소법 제199조 규정형식상 수사가 조사보다 더욱 넓은 개념으로 보임 △ 결국, 수사(搜查)란 일반적으로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이라고 정의됨(형사소송법 학계에서 다수견해)

4)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5)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6)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 (근거규정) 형사소송법(제221조), 준칙, 범수규칙 △ 법적성격은 임의수사 △ 참고인 미출석시 강제수사는 증인신문청구(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7) 통해서만 가능하나 실효성은 별론

○ 피해자 조사의 필요성(=중요성)

- (①증거 수집) 범죄가 발생하였지만 피해자 외에는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유일한 진술증거를 수집하게 됨/ 여기서 피해자의 기억 회상을 통한 증거획득
 - * 주로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가 대표적인 경우
- (②정보 획득) 전략적 증거사용을8) 통한 용의자 신문을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해 용의자 조사에 앞서 범죄 관련 정보 획득을 목적
 - ※ 예) 용의자의 정신상태, 성격, 언어, 성향 등
- (③수사방향 설정)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수사활동의 개관(아웃라인) 설정과 그 범위, 정도를 결정하기 위함
 - ※ 범행과 관련된 참고인(목격자 등)의 존재, 범위, 그 밖에 CCTV 등 증거물의 형태 확인
- (④용의자 특정) 용의자를 추적하고 검거하기 위한 필수 전단계로서, 용의자가 누구인지를 확인
 - ※ 용의자의 인상착의, 라인업 등 (특히 판례의 태도 참조)9)
- (⑤가해자 처벌의사 확인)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소추조건으로서 처벌의사 등을 명확히 확인
- (⑥구속수사 참고자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의 우려 등 직·간접적으로 확인
- (⑦양형자료 활용; 재판단계) 재판에서 형법 제51조에 의거, 양형자료로 활용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7)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8) 전략적 증거사용(SUE: Strategic Use of Evidence)

9) 2007도5201, 2003도 7033, 2007도1950/ 2003도7033, 2007도 3031/ 2000도4946, 2007도1950

○ 피해자 조사에서 고려사항

- ① (기억회상) 피해자 조사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억회상을 통해 현재 현출하는 것/ 기억의 특성과 작용태양을 고려하여야 함
- ② (적법절차) 피해자 조사결과는 결국 형사재판을 통해 법정에서 현출되는 것/ 따라서 피해자 조사과정은 적법절차 준수를 통한 증거가치(증거능력 및 증명력)를 고려
- ③ (2차피해) 발생의 불가피성 인식
 - (2차 피해의 유형) △ 가해 주체에 따라 수사기관, 법원, 언론, 가족,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 △ 피해 주체에 따라 피해자(본인), 친인척, 구조자, 지역사회, 일반국민에 대한 2차 피해로 각각 구분될 수 있음
 -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 그 중 피해자들은 경찰(조사)관의 부적절한 태도 및 언동에 의한 피해를 가장 많이 호소함
 - ※ "피해자 보호 종합 실태 점검결과" (피해자보호담당관실, '18. 7. 16.)
 - (그 외)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적 요소와 영성한 피해자 조사기법의 활용으로 2차 피해를 더욱 가중
 - 즉, 피해자에게는 형사절차로의 진입 자체가 2차 피해로 작용
- ④ (검토) 3가지 요소(기억회상 - 적법절차 - 2차피해)가 반드시 조화되어야 하고 조사과정에 이것이 반영되어야 함

2. 국외훈련의 목적

○ 2차피해 최소화와 효율적 증거수집의 조화방안 모색 필요

– 범인 검거·처벌을 위해 피해자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사과정상 2차 피해 제로(‘0’)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최소화 방안을 모색

– 다만, 피해자 조사를 통한 증거수집의 효율화 방안과 조화될 수 있는 절충점 마련이 필요

※ 예를 들어 피해자를 통한 증거수집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피해자를 10여차례 소환하여 자세하게 조사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할 것임/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조사는 2차피해를 초래하므로 최소한의 출석요구와 그 과정에서 풍부하고 양질의 증거수집, 그리고 그 조사과정에서 최소한의 2차피해를 가져오는 조사기법, 환경적 요소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피해자 조사기법에 대한 주목

– (용어의 정리) 면담기법,¹⁰⁾ 조사기법,¹¹⁾ 조사면접,¹²⁾ 수사면담¹³⁾, 진술면담, 인지면담, 경찰 표준면담 등으로 언급 또는 해석됨 → 이 보고서에서는 ‘조사기법’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 (구별개념) △ 수사 전 면담기법¹⁴⁾ vs 수사 중 면담기법 △ 피해자에 대한 면담기법 vs 용의자에 대한 면담기법¹⁵⁾ △ 피해자에 대한 물적 증거수집 vs 인적 증거수집 △ 법정에서 증인신문기법¹⁶⁾ vs 수사기관에서 조사기법

10) 류경희,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수사 전 면담기법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7.8.), 167-213에서는 “면담기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1) 이봉한·김윤주, “범죄피해자 진술청취시 공감적 조사기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4권 제3호, 2014. 12. 217-239에서는 “조사기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옥현·김제민, “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기법 모색”, 경찰법연구 제7권 제2호, 2009, 265-295면; 박소영, “미국의 성폭력 조사기법과 전담 수사관 양성프로그램”,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3호 (대검찰청, 2009.12), 517-587

12) 이동희, “지적장애·발달장애가 있는 학대아동 조사면접 기법”, 경찰수사연수원 논문집 제3호, 2018, 365-425에서는 “조사면접”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3) 이윤, 수사관의 용의자 면담유형 분류 및 수사면담유형 평가척도의 개발,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13면에서 이윤은 영국에서 PEACE의 도입배경을 소개하면서 “investigative interviewing”을 “수사면담”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사면담이라는 용어의 정호가한 개념정의를 제시하는 문헌은 없다”라고 하면서 “수사면담에 대해 설명한 내용들로 미루어 볼 때 수사면담이란 경찰에서 수사 중인 범죄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피해자, 목격자, 용의자로부터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적이고 윤리적이며 과학적인 면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미선·조은경, “경찰의 아동·장애인 수사면담 지침 운용 실태 및 문제점”,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277-402에서는 “수사면담”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4) 예를 들어 류경희,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수사 전 면담기법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7.8.), 167-213에서는 “수사기관의 개입 전에 이루어지는 관련 전문기관의 진술면담절차”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15) 이윤, “부인하는 용의자에 대한 설득면담전략 제안”, 경찰법연구 제15권 제2호, 2017, 131-159면 참조

16) 김대근·공일규,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 증인신문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

- (관련판례의 태도) 조사기법이 판례에서 수용되거나 언급되는 사례분석
△ 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¹⁷⁾

- <10세 여아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추행, 징역 3년 선고>¹⁸⁾

조사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조사자 소개 및 진술녹화에 대한 안내를 하고 진술조사 프로토콜(NICHD)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기,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기, 추측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기 등 면담의 일반적 규칙을 설명한 다음 조사자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단서제시 진술권유, 초점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한 말을 근거로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회상 후 진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의 질문의 방식과 태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친척이 같이 잠을 자면서 7세 아동 추행, 징역 5년 확정>¹⁹⁾

조사자는 NICHD 기법에 맞게 면담의 일반적 규칙을 설명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맞게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폐쇄형 질문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조사자 편향이나 조사 태도 등에 의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생략)

- (분석) △ 법령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개념, 진술 청취를 위해 활용가능한 조사기법 등에 대한 언급(규정 등)은 전혀 없음 △ 조사기법은 전적으로 실무의 영역에 맡겨져 있음 △ 판례 또한 실무에서 이뤄지는 사실적 현상을 인정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

○ 국내 선행연구의 분석 및 한계점

- (요약) △ 절충점 마련이라는 목적을 위한 선행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태
△ 대부분 해외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사기법들을 국내로 소개하여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 수준 △ 그 또한 일부 제한된 분야(죄명, 피해자 유형 등)에서 이뤄진 것들이 일부 발견되는 등 한계점 존재 △ 특히,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사기법에 대한 연구는 전무 △ 단, 2차피해 발생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는 일부 존재

정책연구원, 2015. 12.), 1-167 참조

17) 이하는 공정식·류경희, 장애인 진술면담 가이드라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연구용역보고서, 91-92면에서 소개된 판례와 그 저자들이 임의로 명명한 판례명을 인용함.

18) 서울고등법원 2015. 4. 21. 선고 2015노694 판결

19) 서울고등법원 2014. 9. 4. 선고 2014노1251 판결

- (선행연구 실태) △ 수사기관 종사자, 피해자 상담심리가 등 실무자들이 작성한 자료들이 발견* △ 학술논문 보다는 단행본, 교육기관 내부교재용 등 실무용 지침서(매뉴얼) 형태로 존재**
- * 이윤, 수사관의 용의자 면담유형 분류 및 수사면담유형 평가척도의 개발,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공정식 · 류경희, 장애인 진술면담 가이드라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연구용역보고서 등
- ** 이동희, “지적장애·발달장애가 있는 학대아동 조사면접 기법”, 경찰수사연수원 논문집 제3호, 2018, 365-425 등
- (분석) △ 피해자 조사를 위한 전략적 기법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면담기법, 조사기법, 수사면담 등이 일정한 기준없이 혼재되어 사용됨(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보임) △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용의자, 피의자)에 대한 조사기법들이 다양하게 발견됨 △ 일부 피해자 조사기법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최종별(아동학대, 성범죄 등) 또는 피해자 유형별(여성, 아동, 장애인 등) 한정된 영역에서의 논의가 발견될 뿐임 △ 그나마 확인된 가·피해자에 대한 조사기법들도 해외의 제도·사례들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일부 변형한 형태로 도입을 시도한 수준
- (문제점 및 한계) △ 일반적인 피해자 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 조사기법은 부재 △ 2차 피해 최소화를 고려한 조사기법 연구 또한 부재

○ 해외 선진 제도·사례 검토

- 영국은 오래전부터 피해자에 관한 풍부한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국가(내무부, 법무부 등)차원에서 전략적 조사기법들을 개발하여 활용(권장)하고 있었음*
 - * PEACE, Enhanced CI, ABE 등
- 특히, 포츠머스 대학 부설 조사기법연구소(CoFI; Centre of Forensic Interview)에서는 25년간 다양하고 풍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수행하여 왔고, 그러한 결과들에 기초하여 조사기법을 개발하여 경찰관 등 실무자에게 교육시켜 왔음

- 그 중심에는 센터장 벅키 레베카 밀네 교수(Prof. Becky Rebecca Milne)*가 있었음.

* 밀네 교수는 '07년 "ABE(Achieving Best Evidence) Document 개발팀"의 일원으로 활약하는 등 ABE에 대한 해박한 지식 보유/ 포츠머스 대학 부설기관인 조사기법 연구소 "CoFI(Centre of Forensic Interviewing)"를 설립하고, 심리학·수사실무 등을 전공한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교육 모듈로 전수 중/ 조사기법 실무를 20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면서, 경찰수사 업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연구자료 등 실무적·학술적 인프라가 매우 촘촘히 구축되어 있음/ 이밖에도 영국 경찰, 기타 형사사법체계와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면담기법 교육 등을 위해 오랜기간 공헌

- 즉, 영국이 피해자 조사에 관하여 선진제도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인과관계들을 토대로 탄탄하고 촘촘하게 구성된 조사기법·조사환경·조사자 태도모델을 개발하여 운용한 것에 기인함.

○ 자료수집을 위한 맞춤형 훈련 계획·시행

- 우리측(훈련단)의 요구사항을 단시간내 효율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사전협의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함

- 또, 피해자 조사와 관련된 주요 연구결과(논문)와 관련 자료 수집을 병행하여 번역, 국내로 소개

▶ 영국 포츠머스 대학의 조사기법연구소(Centre of Forensic Interviewing)는 동 대학의 Becky Milne 교수가 설립,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을 주로 담당

▶ 특히 Becky Milne 교수는 2007년 영국 법무부 출간한 '효율적인 증거수집을 위한 조사기법(Achieving Best Evidence)'의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

II. 훈련 내용

○ 훈련은 다음과 같은 흐름에 따라 이루어 짐

- 1) 피해자 조사기법의 구조와 틀에 대한 이론 교육을 선행
- 2) 이를 바탕으로 훈련 대상자들이 실제 조사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가상의 피해자와 인터뷰를 통해 교육 내용을 실습하고, 피드백을 받음
- 3) 영국 법무부가 개발한 관련 ABE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다른 조사기법들, 즉 인지면담(CI), NICHD, PEACE, REID과의 차이점 등을 비교·분석
- 4) 연구의 성과들이 어떻게 하면 실무에 정착되어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논의함

1. 조사기법의 구조와 틀에 대한 이론 교육

○ 조사자의 행위요소에 관한 세부적 분류

조사 전반	조사자의 태도, 고정관념
조사 前	라포형성, 기본규칙 설정
조사 中	조사 기록방법, 질문유형, 표현요구 보조조사관의 개입, 제3자의 개입활용
조사 後	평가 및 환류

[조사 전반]

가. 조사자 태도의 중요성과 구체적 모습

- (중요성)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쳐 피해자 진술의 질과 양에도 영향을 미침/ 나아가, 증거수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
- (구체적 모습) 조사자의 복장, 시계를 보거나 땀 지을 하는 등의 일상적 행위, 피해자의 진술을 기록하기 위해 모니터만 보거나 고개를 푹 숙이는 행위,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형성 없이 바로 조사를 실시하기, 피해자의 진술을 기록하는 행위에만 몰두하기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나. 조사자의 고정관념 배제 노력

- 그 외에도 조사자의 고정관념 또한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

[조사 前]

다. 조사자와 피해자의 신뢰구축을 위한 라포형성

○ 신뢰구축(Building Trust)의 중요성²⁰⁾

- 우선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²⁰⁾ Training Materials in Portsmouth University (on file with the author)

범죄피해 직후 피해자는 불안하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음

- 그런데 조사관과 피해자는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음/ 따라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라포형성 과정이 필요함

○ 신뢰구축에서 라포형성

- (의의) 라포(rapport)란 ‘면담자가 피면담자와 친근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예비 면담 단계에서 구축된 소통관계’로 정의될 수 있음
- (목적) 피해자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해 진술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피해자와 조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임
- (역할과 지위) 라포형성이 진술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피해자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포형성이라 할 것임
- (필요사항) 현장출동 경찰관, 피의자 조사 경찰, 피해자의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정보가 필요함
 - ※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등등
- (활용요소) 어떤 종류의 요소들이 라포형성에 언급될 수 있는가
 - ※ 가족, 취미, 운동, 애완동물, 학교, 모든 종류의 토픽들
- (형태) 라포형성은 피해자를 만나는 즉시 시작되고, 피해자 조사기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지속됨(네버 엔딩)/ 또한 라포가 형성된 조사관은 변경되지 않고 일관되어야 함.
- (교육훈련) 따라서 조사관의 라포형성을 위한 역할은 중요하고, 사회성의 덕목을 보유하여야 함/ 또 이를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임

○ 신뢰구축의 표현형태

- 명시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주고 비언어적 또는 묵시적 행위 등으로 표현됨
- 예를 들어, 피해자 아이가 조사 경찰관의 주머니에 손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볼 수 있음



< 비언어적 신뢰형성 징표 >



< 피해자(아이)가 조사관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장면 >

라. 조사 前 피해자에게 고지·설명해야 할 5가지 기본규칙들(ground rules)

○ 기본규칙 설정의 중요성(이유)

- 진술의 정확도 증가
- 사실에 근거한 진술획득과 추측성 진술 방지 효과
- 진술내용의 명확화 요구 기회 증대
- 암시(suggestion)에 대한 저항도 증가
- 법적 증거능력의 고려

○ 5가지 기본규칙(Ground rules)과 구체적 예시

- (원칙) ①규칙을 설명하는 방법은 한꺼번에 전체의 규칙 전부를 설명 ②구체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③적절한 예를 사용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 ① “모르겠습니다”(The "Don't know" rule)

- “제가 당신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이 대답을 모르겠다면, 그냥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o)
- “당신이 질문의 대답을 모를 경우, 저는 당신이 추측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이해가 안되거나 대답을 모를 때 말해주길 원합니다. 알겠죠?” “네” (x)
- “당신이 질문에 대답을 모를 경우 그냥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모르겠어요“ (x)

- ② “이해가 안됩니다.” (The "Don't understand" rule)

- “제가 당신에게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은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냥 저에게 ‘무슨말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o)
- “당신이 무언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x)
- “당신의 이름과 성을 하나씩 불러주세요” “네” “당신의 이름과 성을 하나씩 불러달라구요” (x)²¹⁾

- ③ “당신이 틀렸습니다.” (The "You're wrong" rule)

- “가끔씩 제가 실수를 하거나 틀리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에게 제가 틀렸다고 말해주세요“

- ④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The "Tell me everything" rule)

- 저는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저에게 말해 줄 수 있어요

21) 다른 쉬운 용어로 재차 설명을 하지 않았다.

- 저는 당신이 저에게 무슨일이 일어났었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말해 주길 원합니다.
- 놓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것들도 모두 말씀 해 주세요
- 가끔씩 당신이 저에게 이야기 하는 것에 제가 더 알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질문할께요
-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제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 ⑤ “사실과 거짓을 구별해주세요.” (The "Truth and Lies" rule)

-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당신은 저에게 사실만을 이야기 해주세요
- 당신은 거짓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 예를 들어 내가 이것을 부러뜨렸는데도, 당신이 부러뜨렸다고 한다면, 무엇이 사실인가요?

[조사 中]

마. 조사관의 기록행위(방법)

○ 우리나라의 조사관의 기록 방법과 문제점

- (현황) 조사사항 기록의무 규정²²⁾ 존재/ 조사관과 피해자 사이에는 큰 모니터가 가로막고 있고, 조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타이핑하여 기록하는 형태
- (문제점) 이로 인해 조사관은 피해자의 눈을 바라보며 공감적 행위

22)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6. 1.]

를 할 수 없는 환경/ 조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타이핑을 통해 기록해야 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맞도록 추궁해야 함/ 심지어 피해자의 말이 너무 빨라 타이핑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득이 피해자의 진술을 잠시 멈추게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 (문제해결 필요성) 위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내용 기록방법²³⁾이 필요

○ 영국에서 실무적으로 발달된 뭉음(Bubble, 말풍선)²⁴⁾ 조사기법 소개

- (조화방안)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면서도 조사기법(TED)을 저절히 운용하기 위해선 조사자에게 기록을 위한 어떤 도구가 필요함/ 왜냐하면 조사자 또한 적지 않고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Follow up 하기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

→ 말풍선(버블,Bubble)은 이러한 어려움을 손쉽게 해결해 줄 수 있고, 아래와 같은 면에서 이 그 도구로서 유용한 측면이 많음

- (장점) △ 피해자와 눈을 맞추며 공감을 표시하며 면담을 이끌어 갈 수 있음 △ 조사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기록해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짐 △ 피해자와 조사자간 장벽(모니터 등)이 없어짐 △ 그 결과 조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유도하느냐 또는 따라가느냐의 차이가 나타남 △ 범행의 구성요건에 맞게 질문을 선택, 활용할 수 있음 △ 조사자가 구체적 사안 또는 진술내용에 따라 질문의 강약을 주는 등 조사과정의 주도권을 조사자에게 가지도록 할 수 있음

- (구체적 활용 방법)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직장으로 가는 길을 설명하면, 먼저 호텔(Hotel)을 나와 걸어서(Walked) 도로(Road)를 지나는데 무언가 우스꽝스러운 것(Something funny)을 보고서는 자리에 서서 한참을 지켜본 후(Stopped and watched) 나의 직장

23) Training Materials in Portsmouth University (on file with the author)

24) “bubble”이라고 사용되지만 ”말풍선“으로 번역하였다.

CCF에 도착했다(Arrives CCF)."라고 짧게 진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것을 6개의 큰 말풍선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 먼저 "호텔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해보세요"라고 질문하여 호텔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말것을 모두 말해주세요", "길에 있던 것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라풍선화하여 연결시켜준다. 같은 방법으로 "걸어서 가는길에 목격한 것을 질문하면서 말풍선화 하고 선으로 이어둠



< 주요 말풍선 대분류화 >



< 개별 말풍선 추가정보 획득1 >



< 개별 말풍선 추가정보 획득2 >



< 소분류된 말풍선간 상관관계 표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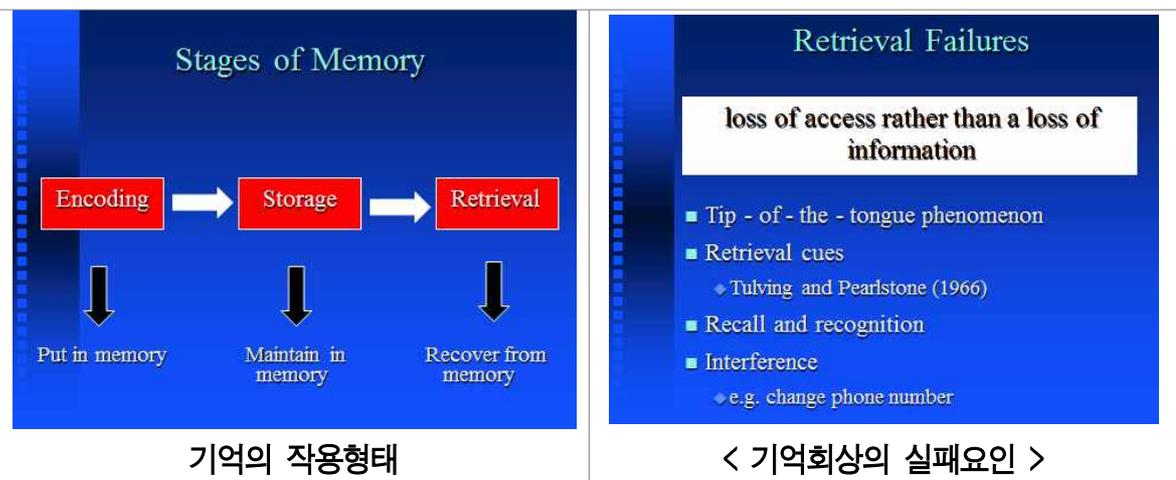
- (진술의 양과 질의 파악) 이 과정에서 진술내용에 따른 말풍선 형성 시 색깔을 다르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은 파란색, 두 번째 질문은 빨강색 등을 통해 질문의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음/ 또한 첫 번째 질문에서 4가지 정보를 획득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 8가지 정보를 획득하는 등 정보획득의 출처와 경위 또한 추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바. 피해자 기억회상을 위한 조사관의 질문

○ 기억의 작용형태와 특성²⁵⁾

- (진술과 기억의 관계) “진술”이란 ‘피해자가 이미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여 언어적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을 말함.
- (기억의 본질) 따라서 기억이란 과거의 경험(their past experiences)에 대한 현재의 상태
- (작용형태) 기억의 부호화, 저장, 인출의 기제로 진행되고, 각 단계별로 각자의 방식대로 이루어짐

부호화(Encoding) → 저장(Storage) → 인출(Retrieval)



- (특성) △ 가변성 △ 오염성 △ 감소성(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의 정도가 약해짐) △ 피암시성 △ 취약성(기억자는 잘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기억자는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기억을 저장한 상태이므로 왜곡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많음)

※ “부호화는 새로운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하는 단계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정신적 기록을 저장하게 되며, 인출 단계에서는 저장된 기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를 꺼내게 된다. 이러한 기억의 작용은 마치 녹화하는 것처럼 정보를 저장하고, 그것을 화면으로 재생하는 것처럼 진행되지

25) Training Materials in Portsmouth University (on file with the author)

않는다. 비록 어떻게 부호화되느냐에 따라 인출되는 정보가 같은 형태일 수도 있지만, 기억은 그것을 목격한 그대로의 정확한 복제가 아니며, 개인의 인지 도식에 맞춰 가장 이해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저장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목격자로서의 기억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증거들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²⁶⁾

○ 기억의 종류와 상호영향관계

- (종류) ①기술적 기억 (Skills memory) ②에피소딕 기억(episodic memory) ③ 일상적 기억(semantic memory)
- (상호영향) 일반적으로 에피소딕 기억은 강렬해서 정확하다고 평가받음/ 그러나 이러한 에피소딕 기억 또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변형되거나 왜곡(twist)되기 쉬움/ 또한 조사자는 목격자(피해자)의 기억을 오염시킬 수 있음
- (영향요소) 기억 회복(retrieval)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함.
 - ※ 고정관념, 폭력, 무기, 무기 집중효과(weapon focus), 스트레스, 약물, 술, 국적, 문화, 인종 등

○ 조사관의 적합한 질문 유형²⁷⁾

개방형 질문	TED (Tell, Explain, Describe) / OPEN (WHICH, WHAT, WHERE, WHO, HOW)
폐쇄형 질문	CLOSED (Did you, Can you, Was, Do you Know)
강요형 질문	FORCED CHOICE ("or"을 사용하거나 2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다른 대답을 허용하지 않음)

26) 류경희,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수사 전 면담기법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7.8.), 170-171면.

27) Training Materials in Portsmouth University (on file with the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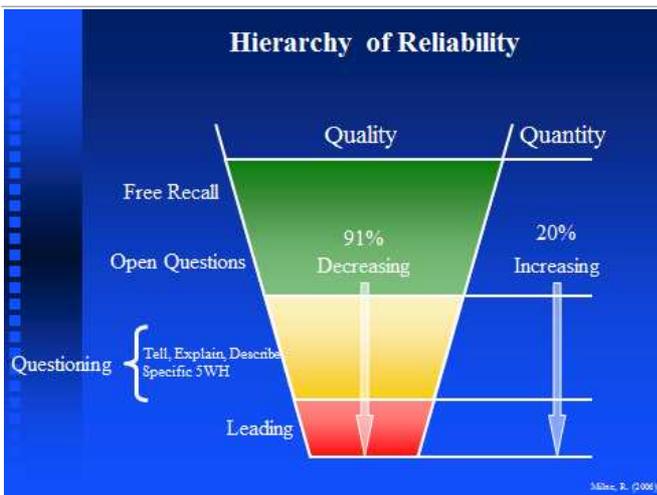
○ 질문유형간의 우선순위(개방형 질문을 해야하는 이유)

- (진술의 질)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유진술을 통한 증거수집의 경우 진술의 질은 매우 뛰어난 반면(91%), 유도질문의 경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 (진술의 양) 반면, 자유진술의 경우 진술의 양은 적은 반면(20%), 유도질문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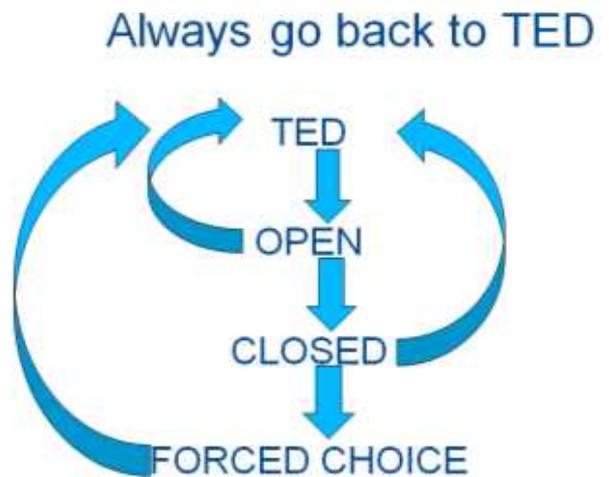
○ 질문 구조화 (Interview Structure)

- 중요한 영역을 질문하기 → 기록하기 → 다시 질문을 이어가기
- 여러 질문유형들이 사용될 수 있지만 단계별로 사용되어야 함
- 여러 질문유형들은 가능한 TED 질문으로 귀결되어야 함

“항상 TED로 돌아가야 한다.”



< 질문유형에 따른 진술의 양과 질과의 상호관계 >



< 질문유형의 단계와 TED로의 회귀원칙 >

사. 보조조사관의 개입

○ 보조조사관 존재의 중요성

- 조사자 혼자서 피해자의 모든 것을 다 조사할 수는 없음
- 정작 피해자를 조사하는 조사자는 많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에 있다(카메라로 녹화되고, 질문의 내용과 유형을 생각하기, 범행의 파헤치기, 동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등
- 주 경찰관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조경찰관에 보완(cover)해 줄 필요가 있음
- 이상적인 모델은 피해자마다 2명씩의 전담조사관이 배치되는 것임/ 예를 들어 피해자가 4명이면 총 8명의 조사관이 필요한 것임. 조사관이 서로 다른 피해자를 누적적으로 조사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피암시성, 진술의 유도 등을 통해 오염되고 이는 곧 증거획득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미침

○ 보조조사관의 임무와 역할

- (조사에 간접개입) 주 경찰관의 실수, 빠짐, 질문유형 사용의 부적절성, 논점의 이탈 등을 지적하고 보완해 줄 필요가 있음
- (조사관에 대한 동료평가)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질문유형을 기록하고(GQM), 그 후 조사관의 질문의 적정성을 평가, 토론, 피드백함으로써 조사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수준의 조사능력 보유하게 함
- (조사업무에 대한 행정지원) 그 밖에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함으로써 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해 줌

아. 피해자 조사에 개입하는 제3자의 활용

- 피해자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활용하여 피해자 진술을 더욱 자유롭게 촉발시킬 수 있음

※ 진술조력인²⁸⁾, 신뢰관계자²⁹⁾, 피해자국선변호사³⁰⁾ 등

자. 다양한 유형의 표현방법 활용

- 피해자가 진술을 오직 언어로만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아야 함
- 그림 그리기, 행동으로 표현하기 등 다양한 방법들로 표현하는 것이 언어로만 진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정확함
- 예를 들어 길거리 강도의 경우, 용의자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으며, 당시 용의자가 입고 있던 옷, 모자, 얼굴 등 인상착의에 관한 정보들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섬세하게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목격자(피해자)에게 진술의 주도권을 넘겨줌으로써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게 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부여하게 하여 더욱 더 많은 정보들을 진술하게 하는 장점
- 그 밖에도 조사자는 피해자의 태도를 은연중에 따라하는 미러링 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안도감과 동질감을 부여할 수 있음

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형사소송법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30) 성폭법 제27조; 아동법 제30조; 아동학대법 제16조; 국선변호사선정규칙

[조사 後]

차. 환류 및 피드백

- 이론적 배운 내용을 각각의 조사관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 조사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사용한 질문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진술의 임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

카. 평가

- 조사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조사관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2. 훈련자의 직접 실습 및 피드백

가. 라포 형성 과정 실습

<p style="text-align: center;">Group 1 Kim Ji Su</p>  <p>Kim Ji Su is a 10 year old girl who has told her father that last night a man from the local town raped her.</p> <p>Ji Su has told him that she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when he took her and raped her in an empty building.</p> <p>The man has told her that if she ever tells the police or her family what has happened then he will come back and hurt her and showed her a big knife.</p> <p>She is very scared about talking to you.</p> <p>He has told her that no one will ever believe her.</p> <p>One of your colleagues has spoken to her mother and found out the following things;</p> <p>Ji Su's favourite thing to do is to pick flowers in the fields and give them to her mother.</p> <p>She has learnt the names of all of the different flowers and plants that grown nearby.</p> <p>She enjoys school and her favourite lesson is learning about animals and plants. Her mother does not know what her least favourite lesson is.</p> <p>When she grows up she has said she wants to be a scientist and look at flowers and plants.</p> <p>You have been asked to speak with Ji Su and get evidence from her.</p> <p>1. Make a plan of how you think the best way to approach her will be and how you will gain her trust and build rapport with her.</p> <p style="text-align: center;">< 사례1의 앞면 ></p>	<p>2. Make a plan of how you could best explain the "Truth and Lies" rule using examples relevant to Ji Su.</p> <p>3. Make a plan of how you could best explain the "Tell Me Everything" rule using examples relevant to Ji Su.</p> <p style="text-align: center;">< 사례1의 뒷면 ></p>
---	--

- (사례) 김지수는 10살 소녀이고, 어젯밤 그녀가 강간당한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 하였다. 그녀는 어젯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남자로부터 남치당한 뒤 빈 건물에서 강간을 당했다. 범인은 그녀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과, 만약 무슨일이 일어나면 그녀에게 되돌아 와서 그녀를 큰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녀는 조사관 당신에게 범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를 두려워 하고 있고, 범인이 그녀에게 경찰관 그 어느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 (추가정보) 당신의 동료 중 한명은 그녀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며 아래와 같은 정보를 획득하였다. 김지수는 꽃꽂이를 매우 좋아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종종 꽃을 가져다 준다. 그녀는 꽃 이름을 다 알고 있으며, 그녀가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동물과 식물을 공부하는 수업이다. 그녀는 커서 자연과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
- (질문) ① 그녀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과 어떻게 그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라포를 형성할 것인가? ② “진실과 거짓” 말하기 규칙에 대해서 그녀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③ “모든 것을 말하기” 규칙에 대해서 그녀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실습교훈) ① 조사관이 경찰관이므로 안심하라는 취지의 접근은 그녀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범인이 그녀에게 “경찰관 그 어느 누구도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② 아동 피해자와의 라포 형성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라포 형성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수사관도 준비 없이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나. 종합 인터뷰 실습

- (개관) 목격자 증언의 정확성과 진술증거 획득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을 상영한 후, 피해자 조사 형식의 진술청취를 통해 목격자의 진술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테스트 할 수 있게 된다.
- (시간순 실습내용) ① 범행동영상 사전 제작 ② 피조사자(실험대상자 선정) ③ 피조사자에게 범행동영상 상영 ④ 조사자에게 범행의 기초사실 제공 및 조사설계 시간부여 ⑤ 조사사의 조사실습 ⑥ 실습과정 기록 및 동료평가 ⑦ 디브리핑 및 환류
- (실습환경) △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는 조사실과 조사녹화 프로그램이 똑같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 조사실습을 녹화하여 동영상 파일로 저장 후 재생하여 디브리핑을 할 수 있었음 △ 또한 조사실 내부를 외부에서만 관찰할 수 있도록 거울유리와 조사실 내 양방향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었음 △ 동영상은 양방향 CCTV가 한 화면에 현출되는 상태에서 녹화되고, 실시간 시간도 함께 기록되어 추후 검색 등에 편리함
- (세부적 실습내용)
 - ① (범행동영상 사전 제작) 강도사건과 관련하여 행인 3명, 또다른 행인 2명, 피해자, 용의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 총 분량은 21초이고 많은 단서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음 / 중요한 것은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은 20여초이고 주변에 많은 시각적 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목격자 진술의 정확성을 실험할 수 있게 됨
 - ② (피조사자-실험대상자 선정) 평범한 일반인들 위주로 실험대상자(목격자) 선정
 - ③ (피조사자에게 범행동영상 상영) 실험대상자로 선정된 피조사자

3명을 범행의 목격자로 가정하고, 가상의 범행사태를 촬영한 동영상을 실제 범행과 유사하게 목격하게 함/ 그 방법은 총 범행시간 20초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단 1번만 상영해 주었음



< 목격자 그룹1 등장 >



< 목격자 얼굴에 표식(X) 존재 >



< 목격자 그룹2 등장 >



< 목격자 그룹2의 인상착의 >



< 피해자가 목격자 그룹2 앞을 지나감 >



< 피해자가 목격자 그룹2 뒤를 지나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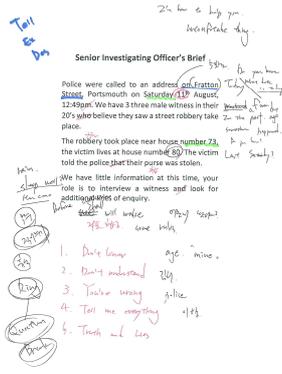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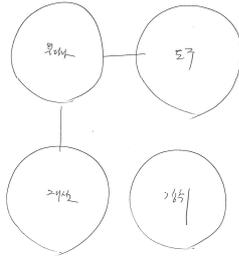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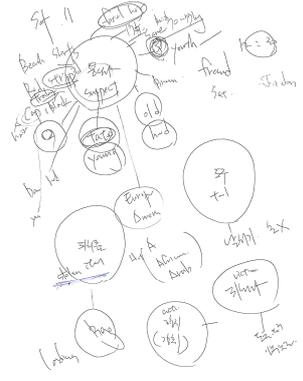


< 범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는 장면 >



< 범인이 피해품을 들고 도망하는 장면 >

④ 조사자에게 범행 관련 기초정보 제공 및 조사설계 시간 부여

 <p>< Case 제시 ></p>	 <p>< 말풍선으로 범행사실 구조화 ></p>	 <p>< 말풍선의 구체화 ></p>
---	--	--

⑤ (조사사의 조사실습 시행) 범행 당시 원거리 목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기법 실습/ 처음에는 라포형성 및 기본규칙을 설명하고, 차례로 피해자 진술조사를 통한 증거수집 하는 방법으로 단계별 실습 시행



< 개방형 질문을 통한 자유진술 유도 >

< 피해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여 상세설명 >



< 라포형성 단계에서 기본규칙을 서면화 >



< 피해자에게 기본규칙을 보게 하면서 자유진술 >



< 자연스러운 라포 형성 >



< 피해자의 진술을 공감하며 청취 >



< 피해자 조사 전 범행 정보 확인 등 준비 >



< 자연스러운 진술유도 장면 >

- ⑦ (디브리핑 및 환류) 피조사자가 디브리핑에 참여하여 실제 조사자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느낀점, 잘한점과 아쉬운 점을 가감없이 이야기 해 주었고, 동료 실습자들 또한 조사실습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슈퍼바이저인 감독자가 총평을 해 주었음.

다. 느낀 점

- 실습과정이 체계적·단계적으로 모듈화 되어 있어 쉽게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
- 대학에서도 실무환경과 매우 유사하게 실습 전문 조사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이론과 실무가 하나되는 학습방법으로 확인됨

3. 조사기법 매뉴얼 내용 분석 및 정리

○ 영국에서 활용되는 조사기법 현황 및 공통점

- 널리 사용되는 조사기법은 총 3가지 △ABE △ PEACE △ ECI로, 인지면담(CI) 방식에 기초하여 피조사자의 자유진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유사
- 과학적·실증적 연구 결과를 반영한 실효적 가이드로서, 증거수집 과정에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 기억의 회상을 촉발시키기 위한 ‘체계적 틀’을 제시 △ 예를 들어 라포형성 과정, 기본적인 규칙 설명과정 들을 통해 조사자와 피조사자간 일련의 규칙들을 정하는 단계
- 중복 질문의 방지함으로서, 피해 내용에 대한 2차 피해 최소화를 가능하게 하고, 기억회상의 극대화를 통한 자발적 진술을 유도하여 신뢰성 높은 증거획득 도모

△ 오픈 질문 - 구체적 질문 - 폐쇄적 진문 단계로 질문하여 기획 회상 진술의 신빙성 극대화 △ 자유 서술형 진술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에도 기여

○ ABE(영국 피해자 조사기법)에 대한 관심 및 연구 필요

- PEACE모델과 NICHD(미국의 아동·성범죄 피해자 조사기법) 등은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있고 실무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나, ABE는 아직 개괄적 내용 소개한 수준
- ABE와 NICHD(미국의 아동·성범죄 피해자 조사기법)는 동일한 심리학적 연구결과와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거의 유사한 구조적 틀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ABE는 아동·성범죄 피해자에 국한하지 않고, 취약하거나 (vulnerable) 겁먹은(intimidated) 피해자 등 보다 폭넓은 범위의 피해자에게 적용 가능한 조사기법
- 보다 폭넓은 활용이 가능한 ABE에 대한 연구 필요

○ 이하에서는 ABE(영국 피해자 조사기법) 조사기법 매뉴얼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

ABE (Achieving Best Evidence)³¹⁾

가. 개관

- (내용) ABE 가이드는 크게 취약한(vulnerable) 증인, 겁먹은(intimidated) 증인, 중요한(significant) 증인들이 주 적용대상임/ 동 가이드는 이와 같은 증인들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인터뷰 준비·진행 과정, 법정 출석에 대비한 지원·준비 과정,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 원문은 “Achieving Best Evidence”라고 명명 △ 국내에서는 “양질의 증거 수집하기” “최선의 증거 얻어내기”³²⁾ 등으로 번역됨
- (개발 동기) 1987년에 클리블랜드에서 있었던 아동 성학대 사건(Cleveland Child Sex Abuse Scandal)
 - ※ 당시 한 종합병원에서 검진 중에 121명의 아동들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성적 학대를 의심 받는다는 판정을 내렸고, 법원에서는 그 중 70%의 아동들에 대해 부모로부터 즉각 격리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담당 판사가 성학대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아과 의사의 1차적 진단만을 지나치게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격리조치에 대해서 부모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분리한 것이 적절하였느냐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교훈으로 취약한 증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 (개발 과정) △ 1992년 아동 증인에 대한 비디오 인터뷰 매뉴얼(the previous practitioner guidance Memorandum of good practice for video-interviewing children)이 제작³³⁾ △ 이후 동 매뉴얼은 2002년에 ‘피해자와 증인들에 대한 가이드(Achieving Best Evidence: Guidance on Interviewing Victims and Witnesses and Guidance on Using Special Measures (2002) (이하 ABE 가이드))’로 전면 개정, 취약한 증인 등 성인

31) 원문은 https://www.cps.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legal_guidance/best_evidence_in_criminal_proceedings.pdf

32) Graham Davies-Anthony Beech(이봉건·이철원 공역), 「범죄수사심리학: 범죄, 사법, 법률, 개입」, 학지사, 193면

33) Great Britain. Home Office, & Great Britain. Dept. of Health. (1992). Memorandum of good practice on video recorded interviews with child witnesses for criminal proceedings. HM Stationery Office.

도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³⁴⁾ △ ABE 가이드는 2007년에 한 차례 개정되었고, 2차 개정을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ABE 가이드 (2011)’에 이르고 있음³⁵⁾ △ 2011년 개정에서는 소년사법 및 형사증거법의 개정, 판례들의 변화, 영상녹화와 관련된 새로운 매뉴얼(Advice on the Structure of Visually Recorded Witness Interviews (2010))의 내용들을 추가로 반영

○ (활용현황) ABE 가이드는 각 경찰기관에 대한 권고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경찰이 ABE 가이드에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서 ABE 가이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연구결과들도 ABE 가이드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ABE 가이드를 정확히 준수하고 얻은 진술은 대체로 큰 어려움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ABE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취득한 진술이라고 해서 바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ABE 가이드를 따르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 (주요 내용) ABE 가이드는 크게 다섯 파트로 구성됨³⁶⁾

- 1) 도입부분에서 특수한 증인들에 대한 각각의 정의
- 2) 인터뷰 준비(planning) 및 진행(preparation) 과정 설명
- 3) 인터뷰 진행(conducting) 방법 기술
- 4) 증인들에 대한 지원(support)과 준비(preparation) 절차
- 5) 증인들의 법정 출석(witness in court)

34) 이러한 변화는 1999년에 제정된 소년사법 및 형사증거법(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99)에서 취약한 성인 피해자나 증인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special measure)를 도입·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35) Ministry of Justice. (2011). Achieving Best Evidence: Guidance on Interviewing Victims and Witnesses and Guidance on Using Special Measures. 보고서의 이하의 내용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11년 ABE 가이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36)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은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및 증인들의 2차 피해 방지에 있으므로, ABE 가이드의 처음 세 파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나머지 두 파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나. 도입; 특수한 증인들에 대한 정의

- 각각의 증인들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³⁷⁾ ABE 가이드에서는 이를 토대로 우선 취약한 증인, 겁먹은 증인, 중요한 증인의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취약한 증인과 겁먹은 증인에게만 특별한 장치(special measure)가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장치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용되는데, 주로 증인 진술 때 가림막(screen)을 치거나, 영상으로 증언(the use of live TV link)을 하거나, 영상녹화된 증언(video recorded interviews)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들이 해당된다.
- ABE가이드는 취약한 증인에 대하여, 우선 나이에 따른 의무규정으로 18세 이하의 소년은 검사 측 또는 피고인 측 증인 여부를 따르지 않고 취약한 증인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이와는 별도로 취약한 증인들은 세 가지 부류가 더 있다.
 - 이들은 1)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1983)에 의해 정신장애(mental disorder)를 가진 증인들, 2) 지능과 사회적 역할(social functioning)에 심각한 손상(significantly impaired)을 입은 증인들, 3) 신체적 장애(physical disability)를 가진 증인들이 해당된다. 이러한 종류의 취약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장애로 인해 이들의 증언의 질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약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조치(special measures)가 가능하다.
- ABE 가이드는 취약한 증인들의 개별적 능력과 장애를 조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칫 증인들의 장애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출 경우, 취약한 증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능력들에 대해서는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취약한 증인들도 수사 단계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매뉴얼에서는

37) 소년사법 및 형사증거법 16장(Section)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데, 동 법은 이후 the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로 개정되었다.

만약 취약한 증인이 보호시설(institutional environment)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경우, 수사와 증언에 협조하고 순응하는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매뉴얼은 이러한 능력들은 공통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 ABE 가이드는 이어서 겁먹은 증인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겁먹은 증인은 공포나 고충으로 인해서 증언의 질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 이러한 부류의 증인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는 1) ‘범행이 이루어진 환경’, 2) ‘증인의 나이’, 3) ‘증인의 인종적·사회적 배경이나 고용·종교·정치적 성향’, 4) ‘피고인, 피고인과 관계되거나 피고인 측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증인에 대한 행동’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구체적인 사례들로는 1) ‘성범죄 피해자’, 2) ‘총기 또는 칼이 사용된 범죄의 증인들’, 3) ‘가정폭력, 인종·종교적 동기에 기반한 범죄, 반복된 범죄와 관련된 증인 또는 피해자들’이 해당된다.

○ ABE 가이드는 사안에 따라 특정한 증인이 어떻게 각각의 부류에 해당되거나 배제되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폭력(vandalism)을 목격한 증인은 취약한 증인이면서도 동시에 겁먹은 증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거리에서 강도 범죄를 목격한 사람의 경우 취약한 증인이지만, 겁먹은 증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현재 또는 과거의 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은 취약한 증인은 아니지만, 겁먹은 증인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이와 같은 분류를 통해 수사기관은 특정한 피해자 또는 증인이 어떠한 종류의 증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심사한 후 조기에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특별한 조치의 활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수사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다만 ABE 가이드는 이와 같은 분류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다. 계획과 준비

- ABE 가이드는 인터뷰 사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인터뷰의 목적은 사건에 대한 증인의 설명을 확인하고 수사를 돕기 위한 추가 정보를 찾아내는 것인데,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인터뷰가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뿐만 아니라 수사의 성패도 이에 달려있다고 지적한다.
 - 때문에 비록 당시 상황이 신속한 인터뷰를 필요로 할지라도, 당시 증인과 관련되어 확보된 정보를 모두 고려하고, 인터뷰의 핵심 이슈와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 인터뷰가 종료되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할 기회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BE 가이드는 비록 시간이 소모될지라도, 초기단계에서 이러한 이슈를 예측하고 커버하는 활동이 질 높은 인터뷰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³⁸⁾
- ABE 가이드는 구체적인 인터뷰 계획 단계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 ① 증인에 대한 정보(Information about the witness)
 - ② 범행에 대한 정보 (Information about the alleged offence(s))
 - ③ 수사에 중요한 정보 (Information important to the investigation)
- 인터뷰 계획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①증인에 대한 정보이다.³⁹⁾ 증인의 특성을 파악해야 특별한 조치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지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필요한 각각의 정보의 범위와 양은 증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증인에 대한 정보가 사전 인터뷰 계획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에 비해 필요한 정보의 양은 적지만, ②항과 ③항의 정보들도 인터뷰 계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38) ABE 가이드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인터뷰 이전에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와 협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경찰과 검찰간의 논의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진술을 획득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는 증인의 의사와 보호자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한다.

39) (initial contact을 통해 수집. 번역 내용 설명)

- ABE 가이드는 인터뷰 계획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아동 증인, 취약한 증인, 겁먹은 증인, 중요한 증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⁴⁰⁾
 - (아동 증인) 범죄혐의(allegation)의 맥락(context), 아동의 동의,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고지, 의료 검사, 정신의학·심리학적 평가, 아동의 과거 피해 또는 인종적·성적·문화적 배경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 (취약한 증인) 아동 증인과 유사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인종적·성적·문화적 배경과 함께, 증인의 지능 또는 사회적 역할의 손상,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겁먹은 증인) 개별 증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관련 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ABE 가이드는 이어서 관련된 범행에 대한 정보와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한다.
- 이와 같이 취득된 정보를 통해,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인터뷰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우선 큰 틀에서 인터뷰의 목적을 정하고, 인터뷰에서 사용되는 기법(techniques)을 결정한다. 이어서는 인터뷰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도 결정한다.
 - ① 인터뷰가 녹화되는 수단 (The means by which the interview is to be recorded);
 - ② 누가 인터뷰를 수행할 것이고, 누가 인터뷰에 동석할 것인지 (Who should conduct the interview and if anybody else should be present (including social support for the witness));
 - ③ 인터뷰를 감독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장비를 작동시킬 것인지 (If anybody should monitor the interview (e.g. investigating officer, supervising officer, specialist/interview adviser, etc.) and who will operate the equipment);
 - ④ 인터뷰의 장소 (The location of the interview);
 - ⑤ 인터뷰의 시간 (The timing of the interview);

40) 보고서에서는 적대적인 증인(hostile witness)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인 2차 피해 방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기로 한다.

- ⑥ 인터뷰 소요시간 (The duration of the interview (including pace, breaks and the possibility of more than one session)); and
 - ⑦ 인터뷰 이후에 무엇이 발생할 것 같은지 (What is likely to happen after the interview).
- ABE 가이드는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인터뷰 시작 전에 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도 미리 계획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성공적인 인터뷰가 되도록 하고 있다.

라. 면담 실시

- (면담의 목적과 초점) 수사기관의 인터뷰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공정한 방법’으로 얻어내야 하고, ‘증인의 이익과 부합’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 이러한 진행 방법은 ABE 가이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부적절한 인터뷰로 인해 취약한 증인 등에 대한 진술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ABE 가이드의 탄생 배경도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ABE 가이드는 인터뷰의 목적과 초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 (면담진행의 유연성·강조)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구조화된 인터뷰 (structured interview)를 제안해왔는데, 이는 자유로운 진술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보다 구체화된 질문들로 진행되는 것이다. ABE 가이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사건의 특성에 맞는 유연성도 강조하고 있다.
 - 즉, 구조화된 인터뷰 기법은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다른 모든 인터뷰 기법을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도식적인 체크리스트들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연성이 성공적인 인터뷰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있다.

○ 구체적인 인터뷰 과정 4단계

- ABE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터뷰의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41)



- 1단계: 친밀감 형성(Establishing Rapport)42)

✓ 준비절차(Preliminaries) : 인터뷰 준비가 완료된 후, 인터뷰어는 큰 목소리로 날짜, 시간, 장소를 알려주고 인터뷰 장소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준다. 그리고 바로 범죄행위에 대해 인터뷰로 시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 중립적인 주제(Neutral Topics) :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41) <그림1>은 공식적인 인터뷰 시작 단계를 구조화한 것이고, 그 이전 단계인 인터뷰 계획 단계에서도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계획 단계에서는 인터뷰어가 4가지의 각 인터뷰 단계에서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준비 없이는 인터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취약한 증인의 경우 진술 내용이 일반적 증인에 비해 덜 완전하지만, 인터뷰가 적절하게 진행될 경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42) ABE 가이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수사 실무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선서 그리고 사실 진술의 중요성(Oath and the Importance of Telling the Truth)’과 관련하여, ABE 가이드는 녹화하면서 인터뷰이로부터 불필요하게 선서를 받으려고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약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할 경우에는 법원은 소급적으로 선서를 욕할 지 그냥 증인을 하도록 할지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이드에서는 아동이나 일부 취약한 증인에게에는 참과 거짓의 구별이 중요하지만, 그 외의 증인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진술의 질과 양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낮은 상황에 처하게 된 인터뷰이의 걱정이 줄어들어야 최대한으로 기억을 회상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터뷰이가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중립적인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좋다. 자칫 긴 질문들은 증인을 피곤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인터뷰의 특성상 장시간 동안 중립적 질문으로 친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아동 증인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공식 인터뷰 단계가 아닌 인터뷰의 준비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친밀 형성 단계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⁴³⁾

- √ 기초 규칙(Ground Rules) : 증인에게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기대되는 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터뷰어가 인터뷰이에게 우선 자연스런 진술을 유도하고, 이후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또한 인터뷰이에게 이해되지 않거나 모르는 것은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인터뷰어가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요약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고지해야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부 취약한 증인은 인터뷰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거나, 인터뷰이가 단순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인터뷰의 전부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이에게 명확히 설명해주어야 한다. 인터뷰 도중 휴식의 기회가 언제든지 주어져야 하며, 취약한 증인을 위해 '터치 카드(Touch Card)'⁴⁴⁾ 등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 2단계 : 자유로운 이야기식 진술(Free Narrative Account)

- √ 자유로운 이야기식 진술로 시작하기(Initiating a Free-Native Account) : 인터뷰어는 인터뷰이로부터 개방형(open-ended) 질문을 통해 방해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설명 유도하여야 한다.⁴⁵⁾ 인터뷰 도중에 인터뷰이의 자유

43) 예를 들어,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진술을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44) 이는 인터뷰 도중 휴식을 원하는 증인들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휴식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여, 인터뷰 시작 전에 휴식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제공된 '터치 카드'를 만짐으로써 휴식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45) 이 때 증인의 배경이나 사건의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뷰를 시작해서는 안 되고, 사건에서의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로운 진술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 질문은 자유로운 진술 이후로 이루어야 한다. 증인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술을 유도할 경우에는 구체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 √ 자유로운 이야기식 진술을 지원(Supporting a Free-Narrative Account) : 증인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는 인터뷰 도중 증인의 진술을 확인하거나 반영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증인의 진술에 대한 승인(approval) 또는 불승인(disapproval)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순응(Compliance) : 취약한 인터뷰이의 경우 지나치게 순응적이어서 인터뷰어가 듣고자 하는 말들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히 인터뷰어가 권위적인 사람일 경우에 더욱 그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반면, 자신에게 일정한 권한이 있다고 느끼는 증인은 굳이 순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때문에 인터뷰이에게 인터뷰에 대한 통제 권한이 일부 주어져야 한다.
- √ 묵인(Acquiescence) & 말조심(Reticence) : 인터뷰어는 질문에 대해 무조건 예/아니오로 대답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아동 성범죄의 경우 많은 인터뷰이들이 진술을 조심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하다.

- 3단계 : 질문(Questioning)

- √ 일반적인 접근(General Approach) : 앞선 자유로운 이야기식 진술 단계에서 인터뷰이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사건 내용에 대한 추가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뷰어는 적절한 보충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어는 전 단계에서 얻은 내용에 기반하여 어떠한 내용이 추가로 필요한지 인터뷰이에게 사전에 고지해주는 것이 좋다. 이 때, 앞에서 설명한 기본

을 유의해야 한다.

원칙들을 재차 상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구체적인 질문 도중에 증인이 인터뷰를 힘들어 할 경우 다시 초기단계로 돌아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 인터뷰 구조(Interview Structure) : 전 단계의 자유로운 진술에서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주제로 분류함이 필요하다. 인터뷰이의 진술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들이 추가 질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얻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뷰어가 갑자기 여러 가지 토픽을 오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설명이 완료된 후에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인터뷰이의 사건에 대한 설명과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한 습득이 단계적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질문의 종류(Type of Questions)

①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 : 정답이 없는 개방형 질문 위주로 이루어야한다. 인터뷰이로 하여금 내용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인터뷰이가 자신의 진술을 조직하도록 한다. 이러한 질문 방식은 인터뷰어가 인터뷰이에게 불필요한 정보 노출하게 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폐쇄형 질문(Specific-Closed Questions) : 구체적인 폐쇄형 질문이 두 번째로 바람직한 형태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주도하면서도 인터뷰이에게 불필요한 정보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인터뷰이의 집중력을 흐리고, 인터뷰에 피동적이게 만들 우려가 있다. 질문에 대한 인터뷰이의 답변 청취시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인터뷰어가 인터뷰이의 충분한 진술을 제지할 경우,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도 인터뷰이는 소극적인 답변을 하는 등 인터뷰어의 성향에 맞춰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구체적인 폐쇄형 질문은 개방형 질문을 보충하는 용도로 부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③ 강요된 선택형 질문(Forced-Choice Questions) : 이러한 질문의 형태는

최대한 피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인터뷰이에게 소수의 종류의 답변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증인은 추측해서 대답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질문 방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조언자에게 인터뷰 계획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경우 인터뷰의 기본적인 원칙을 재차 상기시켜주어야 한다.

- ④ 복수 질문(Multiple Questions) : 복수 질문도 가급적 피해야 하는 형태의 질문이다. 복수 질문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뷰이가 어느 부분에 답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뷰이는 모든 세부 질문을 기억해야 하는 부담에 처하게 되고, 답변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⑤ 유도 질문(Leading Questions) : 유도 질문은 답을 암시하거나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담겨있는 질문을 말한다. 유도 질문은 단지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인터뷰이가 앞서 진술한 내용들도 함께 검토해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법정에서 유도 질문을 할 경우, 반대 측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는 물론 인터뷰 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이 재판단계에서 증거로 제출될 경우 유도 질문의 일부가 편집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다. 연구에 의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효한 기억보다는 질문의 방식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질문 내용이 증인의 기억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도 질문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유도 질문이 새로운 정보를 밝혀낼 경우에는, 인터뷰어는 계속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일부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서 다시 개방형 질문 등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
- ⑥ ABE 가이드는 이외에도 인터뷰 내용에 대한 정리(Summaries),⁴⁶⁾ 일관되지 않은 인터뷰이의 진술(Inconsistencies)⁴⁷⁾에 대한 정리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 및 취약한 증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해

46) 인터뷰 내용을 형식적으로 요약하지 말고, 인터뷰이가 사용한 용어들을 열거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진술 내용을 재확인해야 한다.

47) 일관되지 않은 진술 부분을 인터뷰이에게 정면으로 노출시키는 것보다, 모순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 할 요소(Special Consideration: Children and Vulnerable Adult Witnesses)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 4단계 : 인터뷰의 종료(Closing the Interview)

- √ 요약(Recapitulation) : 인터뷰어가 인터뷰이에게 인터뷰이가 사용한 단어와 문구들을 사용해서 다시 알려줌으로서 정확성 재점검 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요약과정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발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뷰이에게 요약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인터뷰에서 생략된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오랜 인터뷰로 인해 증인이 피곤하거나 집중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요약 단계를 진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 √ 마무리(Closure) : 인터뷰어는 인터뷰를 적정하게 마감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좋은 방법으로서 인터뷰 초기에 친밀감(rapport)을 형성할 때와 같이 다시 중립적인 주제를 활용하여 인터뷰를 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뷰 결과가 빈약하다고 해서 증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감사 등의 표시를 하며 인터뷰와 녹화 진행 등 마무리해야 한다.

- 5단계 : 평가(Evaluation)

- √ 인터뷰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얻어낸 정보에 대한 평가이고, 두 번째는 인터뷰어의 인터뷰 기법과 방식에 대한 평가이다.
- √ 얻어낸 정보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the Information Obtained) : 증인의 진술을 평가함에 있어, 인터뷰어는 증인의 행동을 곧바로 증언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활용하면 안 된다. 인터뷰 팀은 얻어진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특히 사건의 전체의 견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인터뷰의 퍼포먼스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Interview Performance) :

인터뷰를 진행한 인터뷰어의 기술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인터뷰어 스스로 인터뷰 과정에서의 자신의 인터뷰 방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BE 가이드의 지침을 준수하는 지 등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인터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는 감독자나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될 수도 있다.

마. 증인 지원과 준비

- 여기서는 피해자와 증인들에 대하여 법원의 절차, 특별한 조치, 증언 과정에서의 조력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보다 증거 가치가 높은 진술을 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피해자와 증인들로 하여금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을 감소시킴으로서, 참여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진술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는 결국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사실발견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다. 인터뷰 단계, 재판 전 단계, 재판 단계에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바. 법적 증인(특별조치)

- 취약한 증인과 겁먹은 증인에게 특별한 조치 등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의사결정과 계획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형사법원(Crown Court)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유죄답변 및 사건 관리 공판 단계(PCMH)에서 가급적 다루어진다. 이 단계에서 특별한 조치 등에 대한 사용도 결정된다.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증인이 법원 공판에 참석하여 증거의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실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논의

가. 개관

○ (문제제기) 밀네 교수에 따르면, 영국에서 수사실무 개선을 위해 오래전부터 법심리학·형사정책 등 분야에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처리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함.

※ “the strength of psychological research is not the determining factor in whether it is utilised in practice” (Griffiths, A., & Milne, R. (Eds.). (2018). *The Psychology of Criminal Investigation: From Theory to Practice*. Routledge. p.270.

– 때문에 밀네 교수는 아래과 같은 의문점*을 표출하면서,⁴⁸⁾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해당분야의 성과물이 바로 실무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프레임을 제안

* 범죄 수사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우리는 그간의 연구 결과물들을 실제 얼마나 이용하고, 이러한 결과물들이 실무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는가? 2. 우리는 어떻게 열린 마음을 가진 수사관들을 양성하는가? 3. 왜 연구의 성과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가? 4. 왜 정부와 기관들을 연구결과물들이 실무에 적용되는 데 그토록 무관심할까? ... 실상은 문화적, 정치적, 조직적 요소들이 순수한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 활동에 있어서 증거의 중요성(Evidence Based Policing)을 간과하게 된다. 우리는 보다 선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 (해결방안 모색) 밀네 교수는 2018년 발간된 저서 ‘범죄수사심리; 이론에서 실무까지*’의 결론 부분에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활용하여 실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프레임(the Framework for Investigative Transformation, 이하 ‘FIT’)을 제시.

* Griffiths, A., & Milne, R. (Eds.). (2018).

48) Griffiths, A., & Milne, R. (Eds.). (2018). p.271.

○ (개요) 밀네교수가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총 8가지로 구성된 바(FIT)

1. 리더십 (Leadership)
2. 법적 구조 (Legislative framework)
3. 조사관의 마음가짐 (Investigative mind - set or cognitive style)
4. 조사관의 지식수준 (Investigators knowledge base)
5. 조사관 교육 체계 (Training regime)
6. 조사능력 보증방법 (Quality Assurance mechanisms)
7. 조사관의 수준과 기술 (Ability/skill set of investigator)
8. 기술적 보완 (Technology)

– 공정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면, 법집행기관들에서는 위와 같은 8가지 요소들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

나. 리더십 (Leadership)

- 법집행기관의 변화에 있어서 리더십의 역할은 특히 중요한데, 이는 개개의 경찰관과 그들의 직무 집행이 자발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으로,
- 대부분의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의 변화는 외부적 요인(external factor)에 의해 이루어지며, 오판(miscarriage of justice)의 발견 등으로 인해 법집행기관의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요구에 놓일 경우 등에 제한되는 바,
-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선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리더십의 역할이 절대적

다. 법적 구조 (Legislative framework)

- 수사관에게 법에서 의무화 하지 않은 윤리적 기준을 따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의 직무집행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

※ 예를 들어, 많은 연구들이 목격자 지목 과정에서 순차적 라인업(sequential lineup)이 보다 적절함을 확인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이를 강제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때문에 입법자들은 연구결과물들을 적극 활용하여, 경찰활동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직무집행 방법을 제시함이 필요

라. 수사관의 마음가짐 (Investigative mind-set or cognitive style)

- 수사관들은 열린 마음으로 수사에 임하고, 수사 도중에 한 가지 가설 내지 방향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시나리오 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함
- 리더는 수사관들에게 쉽게 수사의 방향 또는 결과를 속단하는 (cognitive heuristics) 것은 수사의 방향과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도록 해야 함.

마. 수사관의 지식수준 (Investigators knowledge base)

- 수사관의 마음가짐은 결국 수사관이 얼마나 진술조사와 관련된 연구의 성과물들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음.
- 때문에 이는 결국 법집행기관이 연구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의 성과물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관들에게 교육시켜야 함을 의미함.

바. 조사관 교육 체계 (Training and knowledge regime)

- 연구의 결과물들이 실무에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 1) 시나리오에 근거한 트레이닝 (수사관이 현장에서 부딪히게 될 실제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2) 소수 인원의 수업, 3) 전문가들에 의한 피드백이 중요

사. 조사능력 보증방법 (Quality Assurance mechanisms)

- 조사능력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경찰관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다는 의미를

넘어,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수사의 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법집행기관들에서는 정기적인 능력 확인에 대해서는 소홀

※ 그러나 오판으로 인한 정부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생각하면(예를 들어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최근 85건의 오판 사례가 밝혀지면서 2200억원 가량의 국가배상을 한 사례), 조사능력 보증에 소모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

아. 조사관의 수준과 기술 (Ability/skill set of investigator)

- 조사관의 개별적인 수준, 능력, 기술이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사관의 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

※ 많은 법집행기관에서는 조사관의 개별적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특정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능력 판단의 대체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왔음

자. 기술의 활용 (Technology)

- 적정한 기술의 활용이 효율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바,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 이후 의무화 된 ‘피의자 신문시 의무적 진술 녹음제’임.

- 그러나 기술의 활용이 적정한 정책과 절차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조사기법의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함이 필요함.

차. (발전방향) 밀네 교수는 이와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구비되었을 때,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 실무적으로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 위와 같은 요소들의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실무와 학계와의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하며,
- 더욱 많은 실무가들이 관심을 갖고 이러한 논의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Ⅲ. 시사점

1. 피해자 조사기법 표준안 마련 및 교육·훈련 시행 필요성

- (개발) 국가 주도 공인 한국형 피해자 조사기법 개발이 필요
 - ※ 영국은 90년대 초 공식적인 수사면담 훈련이 개발됨(Gudjonsson, 2003)
- (벤치마킹) ABE의 국내도입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 필요
 - ※ ① (가능성) 양국의 형사사법체계의 비교대조가 필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증거수집 측면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한 측면은 적어 보임 ② (타당성) ABE의 특징과 맞물리는 부분으로 △ 기존 조사기법의 미비한 공간인 일반적 피해자에게도 적용 가능해 짐 △ 이미 검증된 외국의 조사기법 지침을 수입함으로써 비용·노력·시간 절감 가능 △ 국내의 조사기법의 고도화, 다양화, 정밀화에 기여 ③ (도입방법) ABE의 경찰단계 부분을 일부 발췌, 변형하여 시범운영 하고, 피드백을 통해 최적모델을 개발하는 방안
- (조사기법 훈련의 필요성) 조사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 문구들이 사용됨(TED, Tell me everything(모두를 말해보라) 등)/ 오직 조사를 위해서만 쓰는 언어들이므로, 조사자들이 능숙하게 사용하가 위해선 일정한 훈련이 필요/ 즉 훈련된 조사관은 본인의 실수를 스스로 깨닫고 원칙(TED)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됨/ 또한 조사자는 질문 내용에 대한 결정과 질문의 유형에 대한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능숙하게 사용될 수 있음
- (훈련기회의 의무적 제공 및 평가) 조사자에게 실전 경험이 부족할수록 능력치도 저하됨/ 이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 최소화에도 역행하게 됨 / 따라서 일정한 교육과 그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수반되어야만 우수한 조사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훈련자에 대한 훈련 병행) 한편 조사자를 훈련시키는 훈련자는 또 누가 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
 - ※ 영국의 경우 훈련자 또한 학계로부터 지원받거나 실증적 연구결과등을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등 보완되고 있었음

2. 피해자 전담조사관 운영 및 조사관 평가제도 도입·시행

- (전담조사관)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통성을 이해하는 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전문화 필요/ 특히, 2차피해 최소화를 위해 라포형성, 바람직한 조사태도 등은 집중 훈련과 실습을 통해 숙달되고 훈련받아야 하는 영역임/ 조사질문의 평가, 피드백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게 될 것임
- (평가제도) 또한 위 전담조사관들은 이미 검증된 평가방법들을 통해 선발, 운영되어야 하고, 그 바탕에는 사관 등급 분류를 위한 평가 척도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⁴⁹⁾
 - ※ 영국은 피해자 조사관과 피의자 조사관의 구분 운용하고 있음/ 우선 피해자 전담조사관의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형사는 2-3등급이며 4등급은 관리자급으로 볼 수 있다. 5등급은 관리자를 훈련시키는 전문가이고, 4등급은 경찰관 중에서 오랜 훈련과 경험으로 조사관들을 배정하고 시작과 끝을 결정할 수 있는 등급이며, 2등급과 3등급이 조사할 수 있는 직명은 구분되어 있음/ 그 밖에 월급, 승진 등에서는 불이익 없음

3. 조사관의 직접적 조서작성 행위의 최소화 노력

- (현황)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2차피해 발생요인은 조사관의 조서작성으로 볼 수 있음/ 피해자의 풍부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조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40% 밖에 되지 않는 현실 고려/ 또한 피해자는 본인진술이 서면화 된 것을 다시 읽어보아야 하고 진술한 것과 작성된 조서 간의 차이점을 수정해야 하는 절차가 기다림/ 이는 피해자에게 2,3,4번 진술하게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피해상황을 수차례 진술하는 2차 피해를 야기함
- (도입방안) 따라서 영국의 보조조사관 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함/ 즉, 피해자 조사를 위해 2인 1조로 운영하면서 주(主)조사관 1명은 피해자를 집중면담하고, 다른 한명은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조서를 작성하거나 보완하는 형태/ 조서작성 과정에 속기사를 활용하거나 영상촬영 후 사후 녹취록을 작성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49) 이러한 면에서 이미 밀네 교수가 연구, 개발한 GQM을 활용하는 조사자 평가제도의 도입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4. 교육기관과 실무의 활발한 상호협력 기반 마련

- (실무-이론 협업) 영국의 경우 경찰활동(policing)에 대하여 산학협력 모델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피해자에 대한 전담교육과정 또한 대학에서 먼저 개발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유로로 강좌개설을 의뢰받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조사기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대학 산하 CoFI 등 전문 연구센터 등 설립을 통해 전문화,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었음
- (실무가 존중) 또한 이론연구를 전담하는 교수와 오랫동안 경찰관으로 재직하였던(막 퇴직한) 경찰관 등 실무가 출신의 조교수 등이 협업하여 하나의 교육 모듈을 운영하는 모습은 이론과 실무의 적용 측면에서 매우 인상깊은 모습/
- (섬세한 교육환경) 더구나 교육과정 내내 박사과정 학생들이 함께 하며 교육생들의 이해를 돕고 의문사항을 자체적으로 환류시켜 주면서, 기초적 이론들을 소개시켜주고, 교육생의 사회, 문화적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도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옴

5. 피해자 조사환경 등 시설개선 추진

- 조사실 내부의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함/ 예를 들어 시계의 위치(피해자에겐 보이지 않지만, 조사자에겐 보이는 위치), 의자의 형태(소파 또는 딱딱한 의자), 둥근 탁자(네모난 탁자보다 더욱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바닥(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바닥을 활용한다) 등등 피해자의 특성에 맞게 조사환경을 꾸미는 것 등
- 그러한 활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는 것 또한 조사자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고, 효율적인 조사기법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6. 프레임워크 이론을 활용한 정기적 분석 및 평가

(밀네 교수가 제안한 프레임워크(FIT)를 활용하여 위 열거한 시사점들의 실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한 정기적 분석·평가)

○ 영국에서는 수사실무 개선을 위한 학계의 연구 성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조사 실무의 변화는 여전히 더딘 편

- 밀네 교수는 범죄 수사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왜 연구성과들이 실무에서 활용되는 것이 어려운지, 왜 정부와 법집행기관들은 실무 변화에 저항하는 지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
- 이를 위해 밀네 교수는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연구의 성과물들이 실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8가지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바,

1. 리더십 (Leadership) 2. 법적 구조 (Legislative framework) 3. 조사관의 마음가짐 (Investigative mind - set or cognitive style) 4. 조사관의 지식수준 (Investigators knowledge base) 5. 조사관 교육 체계 (Training regime) 6. 조사능력 보증방법 (Quality Assurance mechanisms) 7. 조사관의 수준과 기술 (Ability/skill set of investigator) 8. 기술적 보완 (Technology)

-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프레임 워크를 활용하여 실무 관행의 변화를 가로막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 있음.
- 특히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도 수사관들이 문답식 조서를 작성하는 실무 관행에 대해,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실무가들이 꾸준히 비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 여전히 문답식 조서작성 방식이 유지되고 있고, 좀처럼 변화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1) 리더십의 문제인지, 2) 법적 구조의 문제인지, 3) 조사관의 마음가짐 또는 지식수준의 문제인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임
-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조사기법 등에 대해 비판적 검토

7. 장기적 과제로 피해자 조사 관련 사항의 입법화 추진

- (권리의무에 중요한 내용에 해당) 피해자 조사에 관한 사항은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임 △ 헌법에서 규정한 재판절차진술권의 전제사항들이기도 함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의거 법으로 지켜줘야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진술의 극대화 △ 입법으로 국회에서 국가에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덜 성숙한(엉성한) 조사관으로 하여금 많은 2차 피해 야기
- 피해자에 대한 라포형성의 제도화* 등을 위해서는 입법추진 필요
 - * '정보제공절차, 조사내용과 이유 고지 등'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공정식·류경희, 장애인 진술면담 가이드라인, 2017년도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 센터 연구용역보고서
- 김대근·공일규,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 증인신문 및 양형심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김재민, 피해자 정보권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경찰학연구 17(2) (경찰대학, 2017)
- 류경희,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수사 전 면담기법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7.8.)
- 박소영, 미국의 성폭력 조사기법과 전담 수사관 양성프로그램,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23호 (대검찰청, 2009.12)
- 이봉한·김윤주, 범죄피해자 진술청취시 공감적 조사기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24권 제3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2.)
- 이 윤, 부인하는 용의자에 대한 설득면담전략 제안, 경찰법연구 제15권 제2호 (경찰대학, 2017)
- 이 윤, 수사관의 용의자 면담유형 분류 및 수사면담유형 평가척도의 개발,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 하옥현·김재민, 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기법 모색, 경찰법연구 제7권 제2호 (경찰법연구회, 2009)
- Graham Davies·Anthony Beech(이봉건·이철원 공역), 「범죄수사심리학; 범죄, 사법, 법률, 개입」, 학지사

2. 외국문헌

- Cooper, P., & Norton, H. (Eds.). (2017). Vulnerable Peopl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 guide to law and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 Ministry of Justice. (2011). Achieving Best Evidence: Guidance on Interviewing Victims and Witnesses and Guidance on Using Special Measures.
- Ministry of Justice. (2011). Vulnerable and Intimidate Witness: A Police Service Guide.

- Great Britain. Home Office, & Great Britain. Dept. of Health. (1992).
Memorandum of good practice on video recorded interviews with child
witnesses for criminal proceedings. HM Stationery Office.
- Griffiths, A., & Milne, R. (Eds.). (2018). The Psychology of Criminal
Investigation: From Theory to Practice. Routledge.
- Risan, P., Binder, P. E., & Milne, R. J. (2017).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rapport in investigative interviews of traumatized victims: a qualitative
study. Policing: A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 Vulnerable Peopl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 Guide to Law and
Practice Paperback - 31 oct 2017

3. 기타

Training Materials in Portsmouth University (on file with the author)